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4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손태화 의원)

2. 제정이유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원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의 설치와 명칭, 규모,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휴장일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표 2, 별표 3)
- 라. 사용 신청과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마. 파크골프장 입장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아.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손태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손태화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수 · 김미나
김영록 · 남재욱 · 박선애 · 성보빈 · 이정희
최정훈 의원(11명)

1. 제안이유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원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의 설치와 명칭, 규모,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휴장일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표 2, 별표 3)
- 라. 사용 신청과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마. 파크골프장 입장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아.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의 건전한 육성과 창원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파크골프장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창원시 체육진흥과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월 ~ 9월): 8:00 ~ 18:00
2. 동계(10월 ~ 3월): 9:00 ~ 17:00

②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회원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1개월 단위 및 1년 단위로 회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창원시체육회 및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 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사용료 전액
2. 사용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1개월 단위의 사용자(월회원): 취소 신고한 주는 제외하고 주 단위 계산(십원 단위 이하 절사)
 - 나. 1년 단위의 사용자(연회원): 취소 신고한 월은 제외하고 월 단위 계산(십원 단위 이하 절사)

3. 파크골프장 일일 사용자가 사용 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미반환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른다.

제13조(파크골프장의 관리)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일일 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에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명칭·규모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칭	규모 (홀수)	위치
1	대산면 파크골프장	18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95-3
2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	18	의창구 북면 외산리 42-2
3	대원 파크골프장	9	성산구 대원동 109
4	풍호파크골프장	9	진해구 풍호동 18-14
5	장천파크골프장	18	진해구 장천동 산 1-300
6	광석골파크골프장	6	진해구 장천동 21번지 (진해드림파크 내)
7	용원파크골프장	18	진해구 용원동 1335번지, 1347-7번지

파크골프장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사용자	월회원	연회원
관내	3,000	15,000	120,000
관외	5,000	25,000	200,000

1. “관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월회원”이란 1개월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월 중에 월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파크골프장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4.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파크골프장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연회원 모집은 창원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7. 초과사용료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8. 제13조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연회원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80퍼센트 감면	
창원시체육회 및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75세 이상의 경로자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파크골프장 월회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	사용기간	
내 용	감면신청사유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월회원으로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월회원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새내기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여부)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월회원 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월회원 스티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3.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

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
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
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18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
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
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